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 고 성 군

수신자 조홍래 귀하 (우 5294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47번길 12)  
(경유)

제 목 정보 ( [ ] 공개      [ √ ] 부분 공개      [ ] 비공개 )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5275253	접수일 2019. 01. 27.
--------------	-------------------

첨부파일 참조	1] 1AA-1706-226828번의 답변중 군수가 결재한 문서를 공개 바랍니다
	2] 군수의 답변시 참고한 2-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경을 공개 바랍니다. 2-2) 행정자치부의 의견서을 공개 바랍니다. 2-3)보건복지부의 의견서을 공개 바랍니다. 2-4)유사사례를 공개바랍니다.
청구 내용	****의견서를 공개 안하면 허위공문서로 간주 합니다.
공개 내용	1. 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불임과 같이 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질의2-4) 유사사례를 공개바랍니다.: 공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주민생활과(☎055-670-2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개 일시	2019. 02. 25. 14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0원	② 우송료 0원	③ 수수료 감면액 0원	계(①+②-③)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공개내용			
	가. 1]군수가 결재한 문서: 비공개			
	- 비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상기 문서는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수의 답변서 참고한 2] 2-1), 2-2), 2-3)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의견서			
- 검토결과: 정보부존재				
- 정보부존재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며, 생산 접수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부존재 결정 통지합니다. 끝.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경상남도고성군수

주무관      임현수

감사담당      김영옥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협조자 기초생활담당 허수은

시행 기획감사담당관-2470(2019. 02. 13.)

우 5293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고성군청 행정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개 구분



(뒤 쪽)

###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경상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지역 및 광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

1. 관련 : 자립지원과-8525(2015.11.24.)호, 3605(2016.6.14)호

복지노인정책과-31731(2015.12.23)호

2.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성과 제고와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점검 결과를 불임과 같이 통보하니

3. 전 시군에서는 타시도 지역자활센터 점검결과 처분 및 지적사항을 지역자활센터에 통보 및 전 직원 공람과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향후 자활센터 현장점검에서 모범사례로 추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동 내용을 전 직원 공람 및 숙지하도록 하고 전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 후 결과를 2016. 6.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광역·지역자활센터 현장점검결과 처분 및 지적사항 특별교육 실시결과 »

기관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참석자	교육강사

\*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는 교육교재 및 교육장면 사진 제출 바랍니다.

불임 1. 2015년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양식(서식) 1부. 끝.

## 경상남도



수신자 전 시장·군수, 경남광역자활센터장

주무관

김영애

기초생활담당

박영규

복지노인정책 전결 2016. 6. 15.

과장

이명규

협조자

시행 복지노인정책과-14664 (2016. 6. 15.)

접수 주민생활과-12545 (2016. 6. 15.)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립동),

/ <http://gsnd.net>

전화번호 055-211-4823 팩스번호 055-211-2719 / [wowwww@korea.kr](mailto:wowwww@korea.kr) / 대국민 공개

보훈은 살아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

### **③ 점포 임대비용 집행 부적정**

- 『2014년 자활사업 안내』(80p)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임대점포는 월 임대비용을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그런데, . . . 지역자활센터는 임대점포의 월 임대비용을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 . 지역자활센터장은,
  - 아울러, 사업단 임대점포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자활사업단 임대료 사용방법(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79호, 2016.2.23.)에 따라 지침에 맞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11.

## 지역자활센터

【처분종류】 : 주의(2)

【지적사항】

### ① 점포 임대비용 집행 부적정

- 『2014년 자활사업 안내』(80p)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임대점포는 월 임대비용을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는 임대점포의 월 임대비용을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지역자활센터장은,
  - 사업단 임대점포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자활사업단 임대로 사용방법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79호, 2016.2.23.)에 따라 지침에 맞게 지출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④ 점포 임대비용 집행 부적정**

- 『2014년 자활사업 안내』(80p)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임대점포는 월 임대비용을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는 임대점포의 월 임대비용을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지역자활센터장은,
  - 아울러, 사업단 임대점포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자활사업단 임대료 사용방법(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79호, 2016.2.23.)에 따라 지침에 맞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④ 점포 임대비용 집행 부적정**

- 『2014년 자활사업 안내』(80p)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임대점포는 월 임대비용을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 그런데, . . . . 지역자활센터는 임대점포의 월 임대비용을 자활근로 사업비로 지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지역자활센터장은,
  - 아울러, 사업단 임대점포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자활사업단 임대료 사용방법(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079호, 2016.2.23.)에 따라 지침에 맞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활사업단 임대료 사용방법 통보

자활근로 사업단 임대료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자활활성화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되, 자활활성화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매출액→자활근로 사업비 순으로 사용가능
- 다만,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전체 사업비 사용내역 및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임차사유, 소재지, 면적, 동일지역 임차료 등)을 명시하여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사업단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료 사용 및 금액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끝.

### 보건복지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 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사(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김영효

서기관

정연희

2016. 2. 23.  
자립지원과장  
임혜성

협조자

시행 자립지원과-1079

(2016. 2. 23.)

접수 복지노인정책과-4941

(2016. 2. 23.)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44-202-3079

팩스번호 044-202-3950

/ kyh44899@korea.kr

/ 대국민 공개